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신병원에서의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34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2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6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문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21.
- (3) 회 부 일 : 2025. 2.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현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병원의 종류를 현재의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에 더하여 ‘정신병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u>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u>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 <u>치과병원·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은</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한 날	

2. 검토의견

- 지난 2021년 7월 22일 한 의료법인으로부터 정신병원의 경우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 제43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됨.¹⁾
-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동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판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2021헌마886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3조²⁾는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이라고 정의하여 면허종별 의료체계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9386호(2009년 개정법)에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43조(진료과목의 표시)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였음.³⁾
- 그런데 2009년 개정법에서는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 포함되어 있었으며,⁴⁾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
- 2) 「의료법」(법률 제9135호, 2008.10.14.시행) 제3조(의료기관) ②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 ③“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專屬)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⑤“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의료법」(법률 제9386호, 2010.1.31.시행)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 4) 「의료법」(법률 제9386호, 2010.1.31.시행)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설치·운영할 수 있었음.⁵⁾

- 이후 2020.3.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면서 정신병원은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되었는데,⁶⁾ 이 과정에서 정신병원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 병원에 해당하게 되어,⁷⁾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그런데 한의사가 아닌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5) 「의료법」(법률 제9386호, 2010.1.31.시행)

제33조(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43조(진료과목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병원: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이나 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6) 현행 규정과 동일

7)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의 경우에만 한의사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⁸⁾

□ 2009년 개정법의 취지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 과목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환자를 치료하는 협진(協診)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2020년 개정법의 취지는 「의료법」상의 정신병원과 당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병원이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보건의료행정상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음.

즉, 그 입법목적이 정신병원에서의 한의과 진료과목 운영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 과목의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개정시한(2025.12.31.)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⁹⁾

8) 유사한 과정으로, 과거 요양병원에 포함되던 정신병원은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2020년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되는 개정 과정에서 정신병원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2020년 당시 제43조제3항을 함께 개정하여 정신병원도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정신병원에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한의과 진료과목은 허용하지 않게 된 특별한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9) 현행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추가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인력 기준과 표시 가능한 범위를 시행규칙 제41조(별표8)에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과목 표시를 못하면 사실상 추가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함.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수정)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정신병원에서의 한의과 협진을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과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발의안에 동의함.

- 다만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표시 가능한 범위, 시설·인력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개정시한(2025.12.31.)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6. 1. 1.부터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의사협회(신중검토)

□ 정신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의학적 치료에 있어 한의학적 치료와 협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바,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대한한 의사협회(찬성)

□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하여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움.

-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음.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운영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시 기존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계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494